■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[별지 제75호서식]

행정기관명

수신자
(경유)

제 목 **매수대금 납부 촉구**

국세 강제징수에 따라 귀하(귀사)가 매수한 아래 재산의 매수대금을 아래 기한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(근거: 「국세징수법 시행령」 제61조).

매 수 인	성 명 (상 호)		주민등록번호 (사업자등록번호)	
	주 소 (사업장)			
체 납 자	성 명 (상 호)		주민등록번호 (사업자등록번호)	
	주 소 (사업장)			
매각재산의 표시				
납부할 금액	금 원 정			
당초 대금납부기한	년 월 일			
납부 촉구기한	년 월 일			

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「국세징수법」 제86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결정을 취소하고 귀하의 공매보증은 체납자에게 지급됩니다. 끝.

발 신 명 의 직인

이 통지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○○○과 담당자 ○○○(전화:)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.

기안자 직위(직급) 서명 검토자 직위(직급)서명 결재권자 직위 (직급)서명

협조자

시행 처리과-일련번호(시행일자) 접수 처리과명-일련번호(접수일자)

우 주소 / 홈페이지 주소

전화( ) 전송( ) /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/ 공개구분

210㎜×297㎜[백상지(80g/㎡) 또는 중질지(80g/㎡)]